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594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이병도, 김성준, 김영철,
김원태, 김지향, 민병주,
박승진, 봉양순, 서준오,
송도호, 송재혁, 왕정순,
이용균, 이원형, 정준호,
최기찬, 황철규 의원(17
명)

1. 제안이유

- 주거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는 결혼이나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신혼부부 주거 마련을 위한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및 출산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신혼부부 주거 마련을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의 9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9(신혼부부 주거 마련을 위한 비용 지원) 시장은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을 위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9(신혼부부 주거 마련을 위한 비용 지원) 시장은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을 위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의9(신혼부부 주거 마련을 위한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신혼부부 주거 마련을 위한 사업 관련 비용이 발생하나, 서울시 관련 부서(주택실 주택정책과)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확인결과 **기추진사업¹⁾**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기추진사업] 서울시 주택실 2025년 <신혼부부청년등 임차보증금 이차지원> : 90,070,604천원

<신혼부부 매입임대> : 168,094,000천원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지원 이차보전 및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볼 경우, 신혼부부 주거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어 기추진사업으로 판단됨